#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218

발의연월일: 2022. 4. 12.

발 의 자:이상헌・김승원・김종민

서영교 · 송기헌 · 송옥주

신동근 • 이수진 • 임오경

전용기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 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상호 계획의 관계에 대 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.

공공디자인은 특정지역에 적용된다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 공간의 범위에 따라 국가, 시·도, 시·군·구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, 광 역과 기초 계획 간의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음. 한편, 현행법은 "펜스", "파고라" 등 외래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 어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외래어인 "펜스"를 "울타리"로, "파고라"를 "퍼걸러(서양식 정자)"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고, 광역계획은 시·군·구의 의견을 들어통합적으로 수립하고, 시·군·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

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 및 제6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나목 중 "펜스"를 "울타리"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파고라"를 "퍼걸러(서양식 정자)"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 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"을 "지역계획"으로,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"광역계획"이라 한다)을 별도로 수립·시 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·도지사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"시·군·구계획"이라 한다)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·군·구계획 (이하 "지역계획"이라 한다)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변경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지역계획부터 적용한다.

#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"공공시설물등"이란 일반 공 📗 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·제작·설치·운영 또는 관 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과 용품,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하다. 가. (생략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, 나. ------울타리-----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. 벤치, 가로 판매대, 파고 라 등 편의시설물 러(서양식 정자)-----라. ~ 사. (현행과 같음) 라. ~ 사. (생 략) 제6조(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6조(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 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 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 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 사"라 한다)는 종합계획에 따 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다. 이하 같다)은 종합계획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"광 역계획"이라 한다)을 별도로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

역계획"이라 한다)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·변경한다.

## ③·④ (생 략)

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, 제4항에 따른 지역 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 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다.

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"지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·도 지사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 하 같다)의 의견을 듣고 충분 히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 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 인 진흥계획(이하 "시·군·구계 획"이라 한다)을 별도로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·군· 구계획(이하 "지역계획"이라 한 다)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변경한 다.
  - 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)

<u>6</u>	<u>지역계획</u>	 <u>제5</u>
<u>항</u> -		 